

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5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6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으로 맞춤형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게 되었으므로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전체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.
- 나.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수수료 규정이 개정됨(개정 2017. 12. 21.)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조문 내 단축용어 정의 삭제(안 제1조)
- 나. 폐지된 「호적법」 관련 용어 삭제 및 「가족관계등록법」상 용어로 정비(안 제5조)
  - 본적 ⇒ 등록기준지
- 다.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(안 제6조)
  - 「전자정부법」 제33조 ⇒ 「전자정부법」 제7조
- 라. 수수료 감면 규정 개정(안 제8조제1항)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⇒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
- 마.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“무료”로 개정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합 의 : 「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 관리책임부서(총무과), 수수료의 감면 등 관리책임부서(복지정책관)과 합의되었음
- 마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 : 2018. 2. 28. ~ 3. 20.(20일간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2018. 2. 26. 결과, 해당 없음
  - 4) 부패영향평가 : 2018. 3. 5. 결과, 개선의견 없음
  - 5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적용)”을 “(적용범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증명등”을 “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증명과 인가·허가, 신고·신청의 수리 및 등록, 지정 및 검사 등(이하 “제증명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요율)”을 “(징수요율)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기준)”을 “(징수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·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(수리·등록을 포함한다)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본적”을 “등록기준지”로, “동일사항에”를 “동일사항의 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인”을 “여러 명”으로, “청구할 때에는 1인”을 “할 때에는 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증명등에 있어”를 “제증명등은”으로, “2대이상”을 “2대 이상”으로, “금액으로”를 “금액을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수수료는 시”를 “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”로, “첨부하게 함으로써”를 “표시되도록 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”을 “구두신청 등과 같이 미리 표시가 어려울”로, “첨부하게 함으로써”를 “표시되도록 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전자정부법」 제33조”를 “「전자정부법」 제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장”을 “대구광역시장”으로, “위임”을 “위임하여”로, “규정에 불구하고 당해”를 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”으로, “징수토록”을 “수수료를 징수하도록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증명등에 대하여는”을 “경우에는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등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등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

제8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, “날인하여야”를 “찍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7조에2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7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〔별표 1〕

## 행정정보공개수수료(제3조 관련)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
전자파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A3 이상 300원</li> <li>· 1장 초과마다 100원</li> <li>- B4 이하 250원</li> <li>· 1장 초과마다 50원</li> </ul> </li> <li>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료</li> </ul> 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li>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·도면·사진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수수료의 1/2로 산정</li> <li>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</li> </ul> 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li>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</li> <li>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</li> </ul> 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

## 〈 비고 〉

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징수방법) ① <u>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.</u> 다만, 제증명등의 <u>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「전자정부법」 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시장의 사무를 구청장·군수에게 위임 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·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.</u></p>	<p>제6조(징수방법) ① <u>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 -</u>  <u>----- 표시되도록 하여</u> -----  <u>----- 구두신청</u>  <u>등과 같이 미리 표시가 어려울</u> -----  <u>----- 표시되도록 하여</u> -----.</p> <p>② 「전자정부법」 제7조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대구광역시장----- 위임하여</u>  <u>-----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</u> -----  <u>-----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--.</u></p>
<p>제8조(수수료의 감면등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<u>수급권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</u></p> <p>2. <u>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, 신청,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</u></p> <p>3. 「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<u>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등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3항의 <u>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u></p>	<p>제8조(수수료의 감면등) ① -----  ----- <u>경우에는</u> -----  -----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<u>수급자가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등</u></p> <p>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<u>국가유공자가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등</u></p> <p>3. <u>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<u>않는</u> -  ----- <u>찍어야</u> -  -----.</p> <p>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<u>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u></p>
<p>제9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9조(규칙)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 -----.</p>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1] 행정정보공개수수료(제3조관련)			[별표1] 행정정보공개수수료(제3조관련)		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	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	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전자파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(생 략)</li> <li>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건 1MB 이내 : 무료</li> <li>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</li> <li>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수수료의 1/2로 산정</li> <li>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(종이출력물)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</li> </ul> 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료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 </li> <li>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·도면·사진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수수료의 1/2로 산정</li> <li>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(종이출력물)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</li> </ul> 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
		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(생 략)			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

□ 「전자정부법」

제7조(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) ① 행정기관등의 장(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(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문서·서면·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, 신고 또는 제출 등(이하 "신청등"이라 한다)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·서면·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, 통보 또는 고지 등(이하 "통지등"이라 한다)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.
-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
-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[국회규칙](#), [대법원규칙](#), [헌법재판소규칙](#), [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](#) 및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한다.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관한 규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12.30.>

- 1. "수급권자"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
- 2. "수급자"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(이하생략)

제5조(수급권자의 범위) 삭제 <2014.12.30.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수급권자의 범위)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.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5조삭제 <2014.12.30.>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생계급여
- 2. 주거급여
- 3. 의료급여
- 4. 교육급여
- 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- 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- 7. 자활급여
- ② (생략)

□ 「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에 관한 규정

제8조(비용의 부담)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, 그 부담하는 금액·징수절차 및 감면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□ 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관한 규정

제7조(수수료의 금액)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.

[별표]

수수료 신·구조문 대비표(제7조 관련)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1]			[별표1]		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	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	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전자파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종이출력물) (생 략)</li> <li>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복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건 1MB 이내 : 무료</li> <li>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(단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</li> </ul> </li> <li>-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(종이출력물)수 수수료의 1/2로 산정</li> <li>-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</li> </ul> ※ 매체비용은 별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종이출력물)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복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료</li> </ul> </li> <li>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(종이출력물)수수료의 1/2로 산정</li> <li>-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</li> </ul> </li> </ul> ※ 매체비용은 별도	
		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(생 략)	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(현행과 같음)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7조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, 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〔별표〕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제1호 사유에 해당함.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박희문